

기획조사 06-012

수출할 때 따라하는
일본의 인증마크

2006. 3

kotra 동북아팀

목 차

전기용품 안전법 : PSE마크

- 1. 전기용품안전법, PSE마크제도의 개요 11
- 2. 적합성 인정 및 승인검사기관 17
- 3. 적합성 검사 22

소비생활용품안전법 : PSC마크

- 1. 소비생활용품안전법, PSE마크 제도 개요 30
- 2. 적합성 인정 · 승인검사기관 35
- 3. 적합성 검사 38

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: PSTG 및 PSLPG마크

- 1. PSTG 및 PSLPG마크 제도 개요 41
- 2. 적합성 인정 · 승인검사기관 45
- 3. 적합성 검사 48

제도 요약 및 경과조치

1. 적합성 검사제도란?

- 적합성 검사제도는 “통상산업성관계의 기준·인증제도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”에 의해 “제품안전4법”이 개정되어, 종래의 인증제도 및 등록형식제도가 적합성검사제도로 이행됨
- 그 핵심은 정부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기술기준 적합성을 자기책임하에서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, 판매할 경우는 개선명령, 표시금지명령, 제품회수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등의 사후규제를 강화함

2. 제품안전 4법과 대상품목은 무엇인가?

- 제품안전 4법은 「소비생활용품안전법」, 「전기용품안전법」, 「가스사업법」, 「액화석유가스의 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」임
- 대상품목은 전기용품안전법 적용을 받는 각종 전기용품 460개 품목,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의 6개 품목, 가스사업법의 7개 품목, 액화석유가스의 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15개 품목임

3. 어떻게 바뀌었는가?

- 전기용품의 경우 구 전기용품단독법의 마크에서 전기용품안전법하에서는 , 마크 제도로 변경.
-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, 마크를, 액화석유가스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, 마크를, 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,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수 없음

4. 적합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가?

- 특정제품으로 분류된 품목의 경우는 승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, 그 외의 제품은 자기책임하에 기술기준적합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마크를 부착함. 이 경우 각 기업이 제 3의 검사기관을 정하여 위탁검사도 가능함

5. 국내에서도 지정된 검사기관이 있는가?

- 국내에서는 일본정부가 승인한 검사기관이 없으므로, 일본의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

6. 구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과조치 기간은 ?

- 「소비생활용품안전법」, 「가스사업법」, 「액화석유가스의 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품목의 경우는 이미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됨
- 전기용품안전법 적용을 받은 제품중 259개제품의 경우 '06년 3월 31일부로 종료됨. 101개 품목은 '08년 3월 31일부로 87개품목은, 2011년 3월 31일일부로 종료됨.
- 종료시점 이후에는 PSE마크를 획득해야 일본국내 판매가 가능함

[대상 품목]

구 분	주요 품목	유예기간	신 마크	구 마크
특정전기용품 (112품목) *2개품목은 유예기간 대상외	온수기,온장고등 32품목	2006.3.31		 <갑종전기용품>
	전기마사지기, AC어 댁터 등 36품목	2008.3.31		
	형광등용 소켓, 스위 치등 42품목	2011.3.31		
특정이외전기용품 (338품목)	냉장고,세탁기,TV,음 향기기등 227품목	2006.3.31		마크 없음 <을종전기용품>
	전기스탠드,에어콘 등 65품목	2008.3.31		
	전선관등 45품목	2011.3.31		

※ 특정전기용품(112품목)

전기용품명	유예기간	전기용품명	유예기간
전선		· 街燈스위치	10년
[고무절연전선류]		· 광전식자동점멸기	10년
· 고무절연전선	7년	· 기타점멸기	10년
· 케이블	7년	· 상계폐기	10년
(도체의 공칭단면적이 22mm ² 이하)		· 플리트스위치	10년
· 단심고무코드	7년	· 압력스위치	10년
· 연합고무코드	7년	· 미싱용컨트롤러	10년
· 대편고무코드	7년	· 배선용차단기	10년
· 원편고무코드	7년	· 누전차단기	10년
· 기타고무코드	7년	· 컷아웃	10년
· 캡타이어코드	7년	· 꽃음플러그	10년
· 캡타이어케이블	7년	· 콘센트	10년
[합성수지계절연전선]		· 멀티탭	10년
· 합성수지절연전선	7년	· 코드커넥터바디	10년
· 케이블	7년	· 아이롱플러그	10년
(도체의 공칭단면적이 22mm ² 이하)		· 기구용꽃음플러그	10년
· 단심비닐코드	7년	· 아댑터	10년
· 단심폴리에틸렌코드	-	· 코드릴	10년
· 연합비닐코드	7년	· 기타꽃음접속기	10년
· 대편비닐코드	7년	· 램프리셉터클	10년
· 원편비닐코드	7년	· 분리플러그바디	10년
· 기타비닐코드	7년	· 기타나사접속기	10년
· 기타폴리에틸렌코드	-	· 형광등용소켓	10년
· 캡타이어코드	7년	· 형광등용 스타터소켓	10년
· 金糸코드	7년	· 분기소켓	10년
· 비닐캡타이어코드	7년	· 방수소켓	10년
휴즈		· keyless소켓	10년
· 온도휴즈	7년	· 키소켓	10년
· 고리휴즈	7년	· 풀소켓	10년
· 관통휴즈	7년	· 버턴소켓	10년
· 기타포장휴즈	7년	· 기타소켓	10년
배선기구		· 나사로제트	10년
· 텀블러스위치	10년	· 고리로제트	10년
· 중간스위치	10년	· 기타로제트	10년
· 타임스위치	10년	· 조인트박스	10년
· 로터리스위치	10년	전류제한기	
· 누름버튼스위치	10년	· 암페아制用전류제한기	7년
· 풀스위치	10년	· 정액제용전류제한기	7년
· 펜던트스위치	10년		

전기용품명	유예기간	전기용품명	유예기간
변압기 · 안정기		전동력응용기계기구	
· 장난감용변압기	7년	· 전기펌프	7년
· 기타가정기구용변압기	7년	· 전기우물펌프	7년
· 전자응용기계기구용변압기	7년	· 냉장용쇼케이스	5년
· 형광등용안정기	7년	· 냉동용쇼케이스	5년
· 수은등용안정기 및 기타고압 방전등용안정기	7년	· 아이스크림냉동기	5년
· 오존발생기용안정기	7년	· 쓰레기처리장치	5년
발열기구		· 전기마사지기	7년
· 전기便座	5년	· 자동세정건조식변기	5년
· 전기온장고	5년	· 자동판매기	5년
· 수도동결방지기	5년	· 욕조용전기기포발생기	5년
· 유리검서럼방지기	5년	· 관상어용전기기포발생기	5년
· 기타동결 및 응결방지용전열기구	5년	· 기타전기기포발생기	5년
· 전기온수기	5년	· 전동식장난감	5년
· 전열식흡입기	5년	· 電氣乗物	5년
· 가정용 전열치료기	5년	· 기타전동력응용유희기구	5년
· 전기스팀욕조	5년	전자응용기계기구	
· 스팀욕조용 발열기	5년	· 고주파탈모기	5년
· 전기사우나욕조	5년	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	
· 사우나욕조용 전열기	5년	· 자기치료기	5년
· 관상어용히터	5년	· 전격살충기	5년
· 관상식물용히터	5년	· 電氣浴器用전용장치	5년
· 발열식장난감	5년	· 직류전원장치	7년
		휴대발전기	
		· 휴대발전기	5년

*5년은 2006년 3월 31일까지, 7년은 2008년 3월 31일까지, 10년은 2011년 3월 31일까지임

※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(338품목)

전기용품명	유예 기간	전기용품명	유예 기간	전기용품명	유예 기간
전선		· 합성수지제등의 엘보	10	· 콘덴서시동유도전동기	7년
[고무절연전선류] · 케이블 (도체의 공칭단면 적 이 22mm ² 를 넘는것)	7년	· 합성수지제등의 코넥터	10	· 콘덴서유도전동기	7년
· 전기溫床선	7년	· 합성수지제등의 박스	10	· 정류자전동기	7년
[합성수지제절연전선] · 형광등전선	7년	· 합성수지제등의 부싱	10	· 코일유도전동기	7년
· 네온전선	7년	· 합성수지제등의 캡	10	· 기타단상전동기	7년
· 케이블(도체의 공칭단면 적 이 22mm ² 을 넘는것)	7년	· 기타전선관류 및 可撻전선 관의 합성수지제등 부속품	10	· 가마형삼상유도전동기	7년
· 전기 溫床선	7년	· 케이블배선용스위치박스	10	전열기구	
전선관		휴즈		· 전기足온기	5년
[금속제전선관류]		· 통형휴즈	7년	· 전기슬리퍼	5년
· 금속제전선관	10	·栓형휴즈	7년	· 전기무릎덮개	5년
· 일종금속제可撻전선관	10	배선기구		· 전기방석	5년
· 이종금속제可撻전선관	10	· 리모트콘트롤릴레이	10	· 전기카페트	5년
· 기타금속제可撻전선관	10	· 컷아웃스위치	10	· 전기요	5년
· 금속제리flow어덕트	10	· 커버부착나이프스위치	10	· 전기모포	5년
· 一種金屬製線桶	10	· 분전반유니트스위치	10	· 전기양카	5년
· 二種金屬製線桶	10	· 전자계폐기	10	· 전기의자커버	5년
· 금속제의 커플링	10	· 라이팅덕트	10	· 전기採暖의자	5년
· 금속제의 노멀밴드	10	· 라이팅덕트용의 커플링	10	· 전기고다츠	5년
· 금속제의 엘보	10	· 라이팅덕트용의 엘보	10	· 전기화로	5년
· 금속제의 티	10	· 라이팅덕트용의 엘보	10	· 기타 採暖전열기구	5년
· 금속제의 크로스	10	· 라이팅덕트용의 티	10	· 전기토스터	5년
· 금속제의 캡	10	· 라이팅덕트용의 티	10	· 전기오븐	5년
· 금속제의 코넥터	10	· 라이팅덕트용의 크로스	10	· 전기생선구이	5년
· 금속제의 박스	10	· 라이팅덕트용의 피드인박 스	10	· 전기로스터	5년
· 금속제의 부싱	10	· 라이팅덕트용의 엔드캡	10	· 전기렌지	5년
· 기타전선관류또는 可撻 전선관의 금속제부속품	10	· 라이팅덕트용의 플러그	10	· 전기곤로	5년
· 케이블배선용스위치박스	10	· 라이팅덕트용의 아답터	10	· 전기소세지구이	5년
[합성수지제등전선관류]		· 기타라이팅덕트의 부속품 및 라이팅덕트의 접속기	10	· 와플철판	5년
· 합성수지제전선관	10	변압기 · 안정기		· 전기오징어구이	5년
· 합성수지제가	10	· 벨용변압기	7년	· 전기열판	5년
· CD관	10	· 표시기용변압기	7년	· 전기술	5년
· 합성수지제등의 커플링	10	· 리모트콘트롤릴레이용변압 기	7년	· 전기물병	5년
· 합성수지제등의 노말밴드	10	· 네온변압기	7년	· 전기남비	7년
		· 연소기구용변압기	7년	· 전기후파이펜	7년
		· 전압조정기	7년	· 전기계란삶는기계	5년
		· 나트륨등용 안정기	7년	· 전기보온그릇	5년
		· 살균등용 안정기	7년	· 전기가습대	5년
		소형교류전동기		· 전기牛乳끓이는기계	5년
		· 반발시동유도전동기	7년	· 전기탕비기	5년
		· 분상시동유도전동기	7년	· 전기커피끓이는기계	5년

전기용품명	유예 기간	전기용품명	유예 기간	전기용품명	유예 기간
· 전기차끓이는기계	5년	전동력응용기계기구		· 佛事용 茶기	5년
· 전기 酒덥히는기계	5년	· 벨트콘베어	5년	· 포장기계	5년
· 전기증탕기	5년	· 전기냉장고	5년	· 물수건포장기	5년
· 전기훈증기	5년	· 전기냉동고	5년	· 짐을 꾸리는 기계	5년
· 전자유도가열식조리기	5년	· 전기제빙기	5년	· 전기탁상시계	5년
· 기타조리용전열기구	5년	· 전기냉수기	5년	· 전기벽걸이시계	5년
· 면도용탕비기	5년	· 공기압축기	5년	· 자동인화정착기	5년
· 전기머리고대기	7년	· 전동미싱	5년	· 자동인화수세기	5년
· 헤어컬	7년	· 전기회전대패	5년	· 등사기	5년
· 머리가습기	5년	· 전기연필깎이	5년	· 사무용인쇄기	5년
· 기타 이용전열기구	5년	· 전동교반기	5년	· 수신인인쇄기	5년
· 전열나이프	5년	· 전기가위	5년	· 타임레코더	5년
· 전기용해기	5년	· 전기捕蟲기	5년	· 타임스탬프	5년
· 전기燒成爐	5년	· 전기에초기	7년	· 전동타이프라이터	5년
· 전기스토브	5년	· 전기 커터기	7년	· 帳票분류기	5년
· 전기납땜기	5년	· 전기 잔디깎는기계	7년	· 문서세단기	5년
· 인두가열기	5년	· 전동탈곡기	5년	· 전동 斷製기	5년
· 기타공작용 및 공예용전열기구	5년	· 전동 정미기	5년	· 丁合機	5년
· 타올훈증기	5년	· 전동軟打기	5년	· 종이철 기	5년
· 전기소독기	5년	· 전동 새끼꼬기 기	5년	· 구멍뚫는기	5년
· 습윤기	5년	· 전란기	5년	· 번호기	5년
· 전기湯のし기	5년	· 세란기	5년	· 체크라이터	5년
· 투입탕비기	5년	· 원예용전기경토기	5년	· 동전 계수기	5년
· 전기순간탕비기	5년	· 곤포가공기	5년	· 지폐 계수기	5년
· 현상향온기	5년	· 스루메 가공기	5년	· 라벨택 기계	5년
· 전열보드	5년	· 과즙기	5년	· 라미네이터	5년
· 전열시트	5년	· 즈스믹서	5년	· 세탁물 마무리기계	5년
· 전열매트	5년	· 푸드믹서	5년	· 세탁물 접이기계	5년
· 전기건조기	5년	· 전기제면기	5년	· 물수건 감는 기계	5년
· 전기플레스기	5년	· 전기製餅기	5년	· 자동판매기	5년
· 전기육묘기	5년	· 커피분쇄기	5년	· 화폐교환기	5년
· 전기부화기	5년	· 전기 깡통따는 기계	5년	· 이발의자	5년
· 전기육종기	5년	· 전기 고기가는기계	5년	· 전기치술	7년
· 전기다리미	5년	· 전기빵썰는 기계	5년	· 모발건조기	7년
· 전기봉제고대기	5년	· 전기절삭기	5년	· 전기면도기	7년
· 전기접착기	5년	· 전기빙쇄기	5년	· 전기이발기	7년
· 전기향로	5년	· 야채세정기	5년	· 전기손톱광택기	7년
· 전기훈제살충기	5년	· 전기食品洗機	5년	· 기타이용용 응용기구	7년
· 전기온습기	5년	· 정미기	5년	· 선풍기	5년

전기용품명	유예 기간	전기용품명	유예 기간	전기용품명	유예 기간
· 순환기	5년	· 전기 溝제작기	7년	· 복사기	5년
· 환기팬	7년	· 전기 구멍파기기계	7년	전자응용기계기구	
· 송풍기	5년	· 전기튜브크리너	7년	· 전자시계	5년
· 전기냉방기	7년	· 전기스케링머신	7년	· 전자식탁상계상기	5년
· 전기냉풍기	5년	· 전기태파	7년	· 전자식금전등록기	5년
· 전기제습기	5년	· 전기너트크리너	7년	· 전자냉장고	5년
· 렌코일유니트	5년	· 전기칼가는 기계	7년	· 인터폰	5년
· 팬부착 대류난방기	5년	· 기타 전동공구	7년	· 라디오수신기	5년
· 온풍난방기	5년	· 전기분수기	5년	· 테이프레코더	5년
· 전기온풍기	5년	· 전기분무기	5년	· 레코더플레이어	5년
· 전기가습기	5년	· 전동식흡입기	5년	· 주크박스	5년
· 공기청정기	7년	· 지압대용기	5년	· 기타음향기기	5년
· 전기제취기	5년	기타가정용전동응용치료기	5년	· 비디오테이프레코더	5년
· 전기방향확산기	5년	· 전기 遊戲器	5년	· 消磁器	5년
· 전기청소기	5년	· 육조용전기온수순환정화기	-	· 텔레비전수신기	5년
· 전기레코더크리너	5년	광원응용기계기구		· 텔레비수신용부스터	5년
· 전기철판크리너	5년	· 사진 燒付기	5년	· 고주파웰더	5년
· 기타전기흡진기	5년	· 마이크로필름리더	5년	· 전자렌지	5년
· 전기 바닥광택기	5년	· 슬라이더영사기	5년	· 초음파 驅除機	5년
· 전기구두 광택기	5년	· 오버헤드영사기	5년	· 초음파가습기	5년
· 운동용구,오락용구세정기	5년	· 반사투영기	5년	· 초음파세정기	5년
· 전기세탁기	5년	· 뷰어	5년	· 전자응용 유희기구	5년
· 전기탈수기	5년	· 일렉트로닉스플래쉬	5년	· 가정용저주파치료기기	5년
· 전기건조기	5년	· 사진 引伸기	5년	· 가정용초음파치료기	5년
· 전기약기	5년	· 사진引伸기용램프하우스	5년	· 가정용초단파치료기	5년
· 전기오르고르	5년	· 백열전구	5년	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	
· 벨	5년	· 형광램프	5년	· 전등부착가구	5년
· 부저	5년	· 전기스탠드	7년	· 콘셉트부착가구	5년
· 차임	5년	· 가정용형광등기구	7년	· 기타전기기계기구부착가구	5년
· 사이렌	5년	· 하드램프	7년	· 조광기	5년
· 전기글라인더	7년	· 정원등기구	7년	· 전기연필	5년
· 전기드릴	7년	· 장식용전등기구	7년	· 누전검지기	5년
· 전기대패	7년	· 기타백열전등기구	7년	· 방법경보기	5년
· 전기톱	7년	· 기타방전등기구	7년	· 아크용접기	5년
· 전기스크류드라이버	7년	· 광고등	5년	· 잡음방지기	5년
· 전기사포	7년	· 檢卵기	5년	· 의료용물질생성기	5년
· 전기광택기	7년	· 전기소독기	5년	· 가정용전위치료기	5년
· 전기sawing machine	7년	· 가정용광선치료기	5년	· 전기냉장고(흡수식)	5년
· 전기 금속판절삭기	7년	· 충전식휴대전등	5년	· 전기절삭용전원장치	5년

전기용품 안전법 : PSE마크 제도

제도명	PSE마크 제도	비고
제도의 성격	신고 및 적합성검사를 통한 자율적인 PSE마크 취득	
도입시기/근거규정	2001년 4월 1일 전기용품안전법	
규제지역	일본전역	
적용대상품목	특정전기용품(112개),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(338개)	
제도주요내용	해당 전기용품 국내제조업체, 수입업체에 마크 취득 및 부착요구	
주관기관	일본 통상산업성, 인증·승인검사기관	
주관기관 국내지점/대행기관		
신청시 필요사항	적합성검사 신청시, 신청서양식 및 검사설비리 스트등	
공장검사 여부	적합성 검사시 공장검사 필수	
승인획득 비용 /소요기간 사례	1개월 내외	
미이행시 제재사항	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위험등 방지명령(회수등)	

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: PSC마크 제도

제도명	PSC마크 제도	비고
제도의 성격	자기확인제도	
도입시기/근거규정	2000년 10월 /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	
규제지역	일본전역	
적용대상품목	• 특정제품 등산용로프,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, 승용차용헬멧 • 특별특정제품 유아용침대, 휴대용레이저응용장치, 욕조용온수순환기	
제도주요내용	특정제품은 자기확인 특별특정제품은 제 3기관에 의한 검사의무	
주관기관	(재)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(유아용침대) (재)일본품질보증기구(휴대용레이저)등	
주관기관 국내지점/대행기관	-	
신청시 필요사항	적합성검사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	
공장검사 여부	2호 검사시 실시	
승인획득 비용 /소요기간 사례	• 유아용침대 : 라벨발급까지 6-8주내외 신청수수료:91엔/개(1호검사),61,200엔(2호검사) • 휴대용레이저응용장치 : 2주에서-2개월 품목마다 상이, 30만엔내외 +출장비+일당	
미이행시 제재사항	제품판매금지등	

일본의 가스기구 PSTG 및 PSLPG마크제도

제도명	일본의 가스기구 PSTG, PSLPG마크 제도	비 고
제도의 성격	제조사업자등에 의한 자기확인 및 적합성검사 제도	
도입시기/근거규정	가스사업법 · 1999년 12월 법률개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· 1999년 12월 법률개정	
규제지역	일본전역	
적용대상품목	· 적합성검사 제품 특정가스용품 4개품목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 7개품목 · 자주검사 제품 특정의 가스용품 3개 품목 특정의 액화석유가스기기 8개 품목	
제도주요내용	제 3의 인정 ·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 기술기준 적합기준에 따른 自主검사	
주관기관	(재)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(검사 및 시험기관) 일본LP가스기기검사협회(검사 및 시험기관)	
주관기관 국내지점/대행기관	-	
신청시 필요사항	적합성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	
공장검사 여부	제 2호 검사시 공장검사 실시 · 검사설비의 확인 및 품질관리체제의 확인	
승인획득 비용 /소요기간	제품의 종류 따라 차이/ 1개월 이상	
미이행시 제재사항	가스용품의 판매 및 판매목적의 진열 금지	

전기용품 안전법 : PSE마크 제도

1. 전기용품 안전법, PSE마크제도의 개요

1) 제도의 성격

-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전기용품안전법은 정부인증, 사업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성을 자기책임하에서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, 판매할 경우는 개선명령, 표시금지명령, 제품회수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등 사후 규제를 강화함

2) 도입시기

- 1961년 11월 ‘전기용품取締法’ 제정
- 1968년 5월 ‘甲種전기용품’과 ‘乙種전기용품’으로 구분
- 1999년 8월 전기용품안전법으로 개정
- 2001년 4월 동법 시행

3) 근거규정 및 법규명

- 기본법규 : 전기용품안전법
 - 제2조(품목지정)
 - 제3조(사업신고)
 - 제8조(기준적합의무)
 - 제9조(특정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)
 - 제10조, 12조(표시)
 - 제42조 5항(위험등 방지명령)
 - 제45조(報告徵收)
 - 제46조(현장검사)
- 관련법규
 -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

-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
-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省令(경제산업성令)
- 인정검사기관등을 인정 및 승인하는 省令(경제산업성령令)

4) 운영배경 및 목적

- 전기용품의 제조, 수입, 판매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함
- 전기용품取締法の 개정을 포함한 “통상산업성의 기준·인증제도등의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”이 1999년 8월 6일 공포. 종래 국가에 의한 “단속”이 중심이 된 규제체계에, 민간에 의한 “안전” 확보체계를 추가하였고, 법률의 명칭도 “전기용품안전법”으로 변경

5) 규제지역 : 일본전역

6) 적용 대상품목

- 특정전기용품 : 현재 112 품목
 - 고무절연전선류, 합성수지계절연전선류, 휴즈, 배선기구, 전류제한기, 변압기·안정기, 전열기구, 전동력응용기계기구, 전자응용기계기구, 기타 교류용전기기계기구, 휴대발전기등
 -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기재
-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 : 현재 338 품목
 - 전선류, 전선관, 휴즈, 소형교류전동기, 전열기구등
 -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기재

7) 제도의 주요내용

□ 특정전기용품 및 특정이외의 전기용품으로 구분

○ 특정전기용품

- 기존의 甲種전기용품이 특정전기용품으로 변경되었으며, 등록제조사업자제도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변경됨. 또한 형식인가도 폐지되어 국가에 대한 신청은 필요없게 됨
- 형식시험은 적합성검사로서 제 3자의 기술적 확인을 받아야 하며, 검사는 자기확인 원칙하에 제3자에 의한 기준적합성검사를 받으면 되고, 적합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대행제를 배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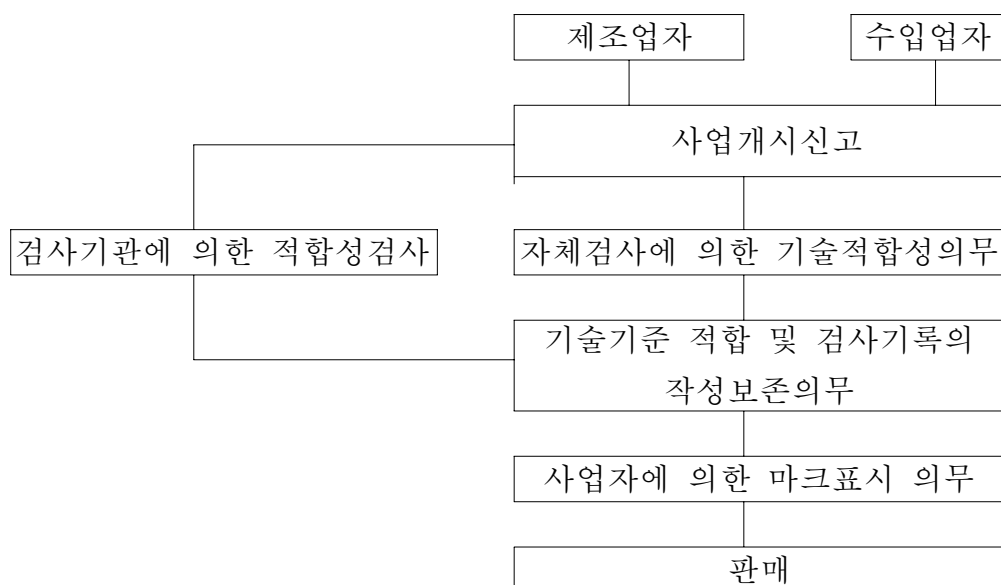
○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

- 기존의 乙種전기용품이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으로 변경되었으며 자기확인 원칙하에 기술기준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의 작성 및 기록보존이 의무화됨

[전기용품 안전법의 체계]

<특정전기용품>

<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>



□ 특정전기용품

○ 사업신고

- 특정전기용품의 제조 사업자 및 수입자는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라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음

“전기용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전기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, **소정의 사항**을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”(별칙 : 30만엔 이하의 벌금)

- 소정의 사항

- 성명(회사명), 주소, 대표자명(법인의 경우)
- 전기용품의 형식구분
-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명칭 및 주소

○ 적합성 검사

-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받고, 교부된 적합성 검사증명서를, 전기용품안전법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음(별칙 : 30만엔 이하의 벌금)

- 국가에 대한 종래의 형식인가신청은 不要함

○ 기술기준의 적합의무

- 신고사업자가 교부 받았던 적합성검사증명서의 특정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, 그 전기용품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함.
-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, 검사방법등에 대해 개선명령이나, 1년 이내의 기한으로 표시금지, 당해전기제품의 회수명령등의 위험등 방

지명령이 적용됨(표시의 금지, 위험등 방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: 1년이하의 징역, 100만이하의 벌금)

○ 검사 및 검사기록의 보존 의무

- 신고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특정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, 그 검사기록을 작성, 보존할 의무가 있음(벌칙 : 30만원 이하의 벌금)
- 또한 그 검사항목, 검사내용은 전기용품안전법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,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임

○ 표시의 의무

- 사업신고자가 특정전기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, 적합성검사, 기술기준적합의무, 검사의무등을 이행하고, 그 특정전기용품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표시를 해야함(벌칙 : 1년이하의 징역,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)

〈PSE마크〉



PSE : 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& material

○ 판매의 제한

- 특정전기용품을 제조,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PSE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제품은 판매할 수가 없음(벌칙 : 1년이하의 징역, 100만원 이하의 벌금)

□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

- 사업의 신고, 기술기준의 적합의무, 검사등의 의무, 표시의 의무,

판매제한등에서 특정전기용품과 동일함

- 단 적합성검사의 경우 특정전기용품은 제 3의 검사기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지만,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자기책임하에 적합성 검사를 실시함
- PSE마크는 아래와 같음



☐ 제품유통후의 조치

- 보고 징수
 - 경제산업성 장관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전기용품의 제조, 수입, 판매의 각 사업을 하는 者를 대상으로 그 업무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수 있음
- 현장검사
 - 경제산업성(담당자)은 전기용품의 제조, 수입, 판매를 하는 사업소, 공장, 사업장, 점포, 창고등에 들어가 전기용품, 장부, 서류,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음
 - 판매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소, 사업장, 점포 및 창고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사가 수행함
- 개선명령
 - 경제산업성은 신고사업자가 기준적합의무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사업신고자에게 전기용품의 제조, 수입 및 검사의 방법, 기타 업무의 방법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

○ 표시의 금지

- 기준부적합한 전기용품을 제조, 수입한 경우 위험또는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검사기록의 작성, 보존의무 및 특정전기용품제조, 수입에 관한 인정·승인검사기관의 기술기준적합성 검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- 경제산업성 장관은 사업신고자에 대해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고한 형식의 전기용품에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할수 있음

○ 위험등 방지명령

- 경제산업성 장관은 신고사업자에 의한 무표시품의 판매, 기준부적합품의 제조, 수입, 판매에 의해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, 당해 위험 및 장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한 당해제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

2.. 적합성 인정 및 승인검사기관

1) 인정검사기관

- 근거규정 : 전기용품안전법 제29조~36조,
- 검사기관 인정의 조건 : 전기용품안전법 제31조
 - 국내에 있는 사업소에 의해 검사를 하는 者
 - 적합성검사의 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충분한 經理的 기초 및 기술적능력을 보유할 것
 - 법인의 경우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구성원의 구성이 적합성검사

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(인정검사기관의
구성원에 관해서는 전기안전용품안전법 시행규칙 21조에 규정)

- 적합성검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는 者로서 경제산업성령에
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일 것(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 22
조에 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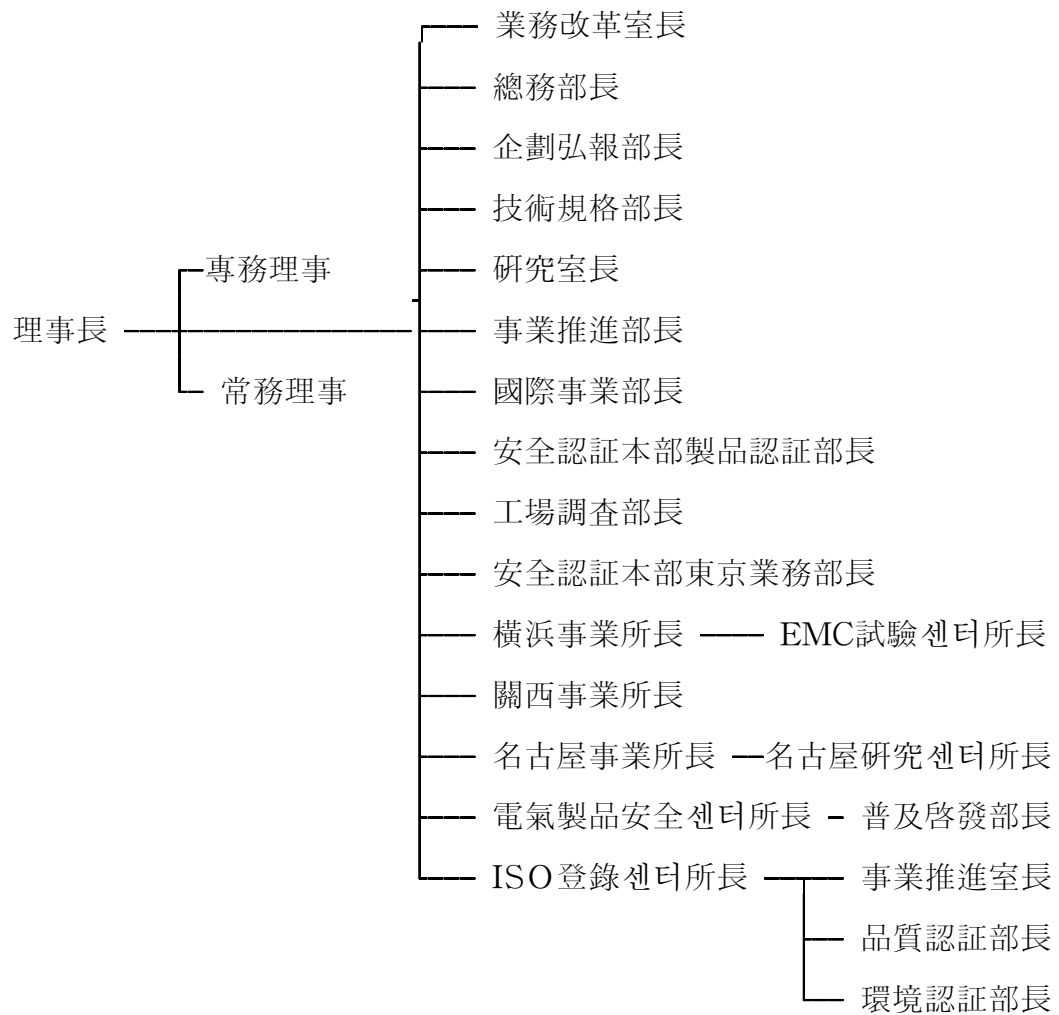
2) 승인검사기관

- 근거규정 : 전기용품안전법 제42조의 3 ~ 제42조의 4
- 검사기관 승인의 조건
 - 외국에 있는 사업소에서 검사를 행하는 者
 - 기타조건의 경우 인정검사기관의 인정조건을 준용함

3) 검사기관명

- (재)電氣安全環境研究所, (재)日本品質保證機構, (사)電線綜合技術센
타, 튜브라인란드저팬(주), 코스모스코퍼레이션(주), 유엘아팩스인터
네셔널(주)
- (財)電氣安全環境研究所(JET)
 - 주 소 : 東京都 涉谷區 代代木 5-14-12
 - 전 화 : 03-3466-5234
 - 팩 스 : 03-3466-9219
 - 홈페이지 : <http://www.jet.or.jp>
 - 인정일자 : 2001년 4월
 - 認定구분 : 전선, 휴즈, 배선기구, 전류제한기, 소형단상변압기 및
방전등용 안정기, 전열기구, 전동력응용기계기구, 전자
응용기기기구, 교류용전기기계기구, 휴대발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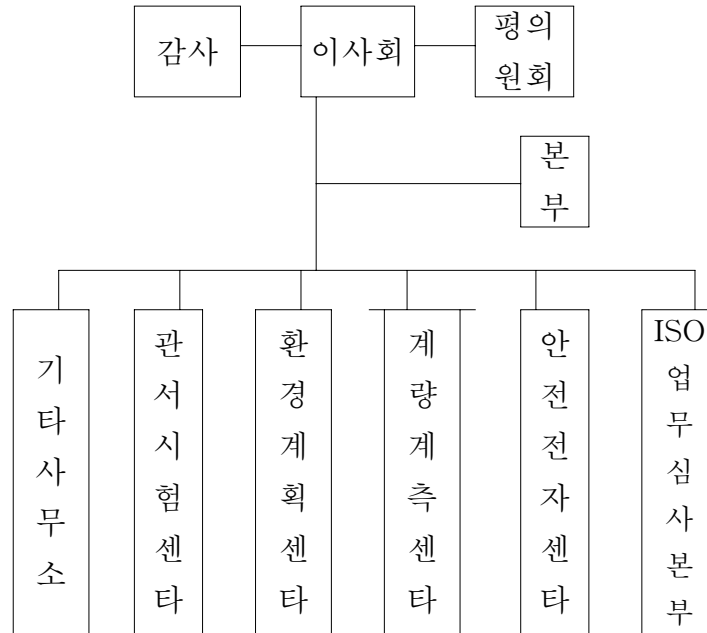
- 조직도



○ (財)日本品質保證機構(JQ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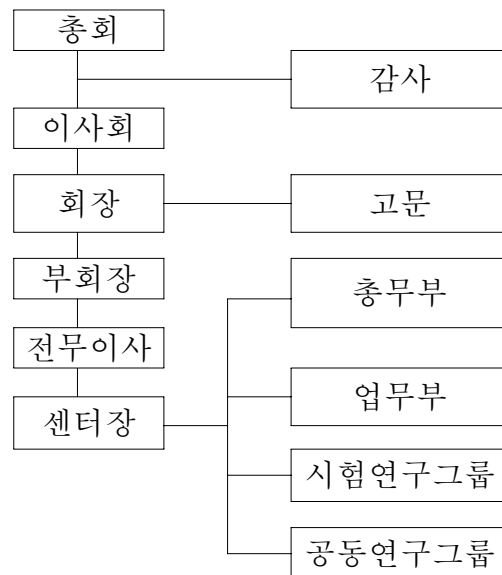
- 주 소 : 東京都千代田區丸の内 2-5-2
- 전 화 : 03-6212-9001
- 팩 스 : 03-6212-9002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jqa.jp>
- 인정일자 : 2001년 4월
- 인정구분 : 배선기구, 소형단상변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, 전열기구, 전동력응용기계기구, 전자응용기계기구, 교류용전기기계기구, 휴대발전기

- 조직도



○ (社)電線綜合技術센터(JECTEC)

- 주 소 : 靜岡縣 浜松市 新都田 1-4-4
- 전 화 : 053-428-4689
- 팩 스 : 053-428-4690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jectec.or.jp>
- 인정일자 : 2001년 4월
- 인정구분 : 전선
- 조 직 도 :



○ TUV RAEINLAND JAPAN 주식회사

- 주 소 : 新奈川縣横浜市港北區新横浜3-19-5
- 전 화 : 045-470-1850
- 팩 스 : 045-473-5221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jpn.tuv.com>
- 인정일자 : 2001년 6월
- 인정구분 : 소형단상변압기 및 방전등용안정기, 전열기구, 전동력
응용기계기구, 교류용전기기계기구

○ 주식회사 COSMOS CORPORATION

- 주 소 : 三重縣 度會郡 度會町 大野木 3571
- 전 화 : 0596-63-0707
- 팩 스 : 0596-63-0777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safetyweb.co.jp>
- 인정일자 : 2001년 6월
- 인정구분 : 전류제한기, 소형단상변압기 및 방전등용안정기, 전동
력응용기계기구, 전자응용기계기구, 교류용전기기계기
구, 휴대발전기

○ 주식회사 UL APEX

- 주 소 : 三重縣 伊勢市 朝熊町 4383-326
- 전 화 : 0596-24-6717
- 팩 스 : 0596-24-8020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ulapex.co.jp>
- 인정일자 : 2001년 8월
- 인정구분 : 소형단상변압기 및 방전등용안정기, 교류용전기기계기
구

4) 적합성 승인검사기관

- 승인검사기관으로는 미국의 UL, UL-Europe등임
- 한국에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검사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은 어
없음. 단 산업기술시험원(KTL)에서 신청대행을 받고 있고, 제품검
사 및 공장조사를 하고 있음.

3. 적합성 검사

1) 적합성검사 신청 서류

- 신청서 양식
- 형식의 구분표(검사기관이 보유)
- 구조등의 개요
- 중요부품리스트등
- 시험용샘플
- 검사설비리스트

2) 적합성검사의 내용과 방식

- 적합성검사에는 전기안전용품법 9조에 의거, 특정전기용품 그 자
체와, 공장 및 사업장 검사를 받아야 함
- 공장검사
 - 공장검사 기간은 1일 정도 소요됨.
 - 공장검사 항목
 - 일반개황 : 회사개요 청취, 책임자 면담
 - 서류심사 : 등록사항, 특정 제조설비 및 특정검사설비, 형식인가
관련사항 등
 - 사내검사 실시상황
 - 사고정보관리 체계

- 제품샘플 검사 : 기술기준적합성, 표시상태 등
- 현장검사 : 작업공정,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보유여부, 계측기 관리의 적정성

○ 제품검사

- i)製造工程 검사, ii)完成品에 대한 검사, iii)試料(재료, 부품, 반제품)검사로 구분하여 검사
- 제조공정 검사
 - 특정전기용품의 제조공정의 검사는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, 해당제품의 구조, 재질 및 성능에 대한 검사 실시
- 완성품에 대한 검사
 - 외관, 絶縁耐力, 通電등 제품마다 해당제품의 특성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
- 試料(재료, 부품등)에 대한 검사
 - 특정전기용품의 재료, 부품, 반완성품 및 완성품에서 임의로 추출한 시료에 대해 검사
- 검사의 내용, 검사방법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관한 省令제 1항에 따르며 JIS마크 제품에 대해서는, 데이터 제출시 검사가 간소화 되기도 함

3) 검사기간

- 검사기간은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전제로 신청에서부터 “적합성검사증명서” 발행까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제품에 따라 소요 기간이 상이함

4) 검사유효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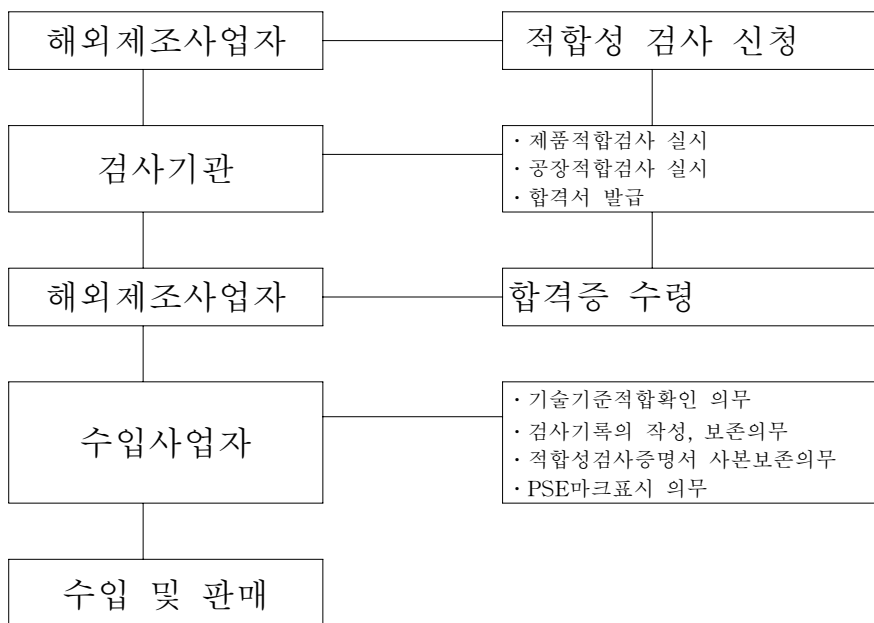
- 품목별로 3년, 5년, 7년의 증명서의 유효기간 설정

5) 검사비용

-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제품 검사비용이 200,000엔 ~ 350,000엔 수준임(JQA 경우)
- 기존의 적합성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일 경우, 공장검사는 서면조사로 대체되며 서면조사는 3,000엔, 현장 공장검사를 실시할 경우 90,000엔 소요. 해외기업일 경우 교통비가 추가됨
- AC어댑터 스위칭타입(JQA의 경우)

구분	기존검사실적(有)	기존검사실적(無)
제품검사비용	335,000엔	335,000엔
공장검사비용	3,000엔	90,000엔
증명서발급비용	6,000엔	6,000엔

6) 적합성 검사의 흐름도



※ 특정 전기용품(112품목)

전기용품명	증명서 유효기간	전기용품명	증명서 유효기간
전선		· 街燈스위치	7년
[고무절연전선류]		· 광전식자동점멸기	7년
· 고무절연전선	7년	· 기타점멸기	7년
· 케이블	7년	· 상계폐기	7년
(도체의 공칭단면적이 22mm ² 이하)		· 플러트스위치	7년
· 단심고무코드	7년	· 압력스위치	7년
· 연합고무코드	7년	· 미싱용콘트롤러	7년
· 대편고무코드	7년	· 배선용차단기	7년
· 원편고무코드	7년	· 누전차단기	7년
· 기타고무코드	7년	· 컷아웃	7년
· 캡타이어코드	7년	· 꽃음플러그	7년
· 캡타이어케이블	7년	· 콘센트	7년
[합성수지계절연전선]		· 멀티탭	7년
· 합성수지절연전선	7년	· 코드커넥터바디	7년
· 케이블	7년	· 아이롱플러그	7년
(도체의 공칭단면적이 22mm ² 이하)		· 기구용꽃음플러그	7년
· 단심비닐코드	7년	· 아댑터	7년
· 단심폴리에틸렌코드	7년	· 코드릴	7년
· 연합비닐코드	7년	· 기타꽃음접속기	7년
· 대편비닐코드	7년	· 램프리셉터클	7년
· 원편비닐코드	7년	· 분리플러그바디	7년
· 기타비닐코드	7년	· 기타나사접속기	7년
· 기타폴리에틸렌코드	7년	· 형광등용소켓	7년
· 캡타이어코드	7년	· 형광등용 스타터소켓	7년
· 金糸코드	7년	· 분기소켓	7년
· 비닐캡타이어코드	7년	· 방수소켓	7년
휴즈		· keyless소켓	7년
· 온도휴즈	7년	· 키소켓	7년
· 고리휴즈	7년	· 폴소켓	7년
· 관통휴즈	7년	· 버턴소켓	7년
· 기타포장휴즈	7년	· 기타소켓	7년
배선기구		· 나사로제트	7년
· 텀블러스위치	7년	· 고리로제트	7년
· 중간스위치	7년	· 기타로제트	7년
· 타임스위치	7년	· 조인트박스	7년
· 로터리스위치	7년	전류제한기	
· 누름버튼스위치	7년	· 암페아制用전류제한기	7년
· 폴스위치	7년	· 정액제용전류제한기	7년
· 팬던트스위치	7년		

전기용품명	증명서 유효기간	전기용품명	증명서 유효기간
변압기 · 안정기		전동력응용기계기구	5년
· 장난감용변압기	7년	· 전기펌프	5년
· 기타가정기구용변압기	7년	· 전기우물펌프	5년
· 전자응용기계기구용변압기	7년	· 냉장용쇼케이스	5년
· 형광등용안정기	7년	· 냉동용쇼케이스	5년
· 수은등용안정기 및 기타고압 방전등용안정기	7년	· 아이스크림냉동기	5년
· 오존발생기용안정기	7년	· 쓰레기처리장치	5년
발열기구		· 전기마사지기	5년
· 전기便座	5년	· 자동세정건조식변기	5년
· 전기온장고	5년	· 자동판매기	5년
· 수도동결방지	7년	·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	3년
· 유리김서림방지	7년	· 관상어용전기기포발생기	3년
· 기타동결 및 응결방지용전열기구	7년	· 기타전기기포발생기	3년
· 전기온수기	5년	· 전동식장난감	5년
· 전열식흡입기	5년	· 電氣乗物	5년
· 가정용 전열치료기	5년	· 기타전동력응용유희기구	5년
· 전기스팀욕조	5년	전자응용기계기구	
· 스팀욕조용 발열기	5년	· 고주파탈모기	3년
· 전기사우나욕조	5년	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	
· 사우나욕조용 전열기	5년	· 자기치료기	3년
· 관상어용히터	5년	· 전격살충기	5년
· 관상식물용히터	5년	· 電氣浴器用전용장치	5년
· 발열식장난감	5년	· 직류전원장치	5년
		휴대발전기	
		· 휴대발전기	5년

※ 특정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(338품목)

전기용품명	전기용품명	전기용품명
전선	· 합성수지제등의 엘보	· 콘덴서시동유도전동기
[고무절연전선류]	· 합성수지제등의 코넥터	· 콘덴서유도전동기
· 케이블 (도체의 공칭단면적이 22mm ² 를 넘는것)	· 합성수지제등의 박스	· 정류자전동기
· 전기溫床선	· 합성수지제등의 부상	· 코일유도전동기
[합성수지계절연전선]	· 합성수지제등의 캡	· 기타단상전동기
· 형광등전선	· 기타전선관류 및 可撓전선관의 합성수지제등 부속품	· 가마형삼상유도전동기
· 네온전선	· 케이블배선용스위치박스	전열기구
· 케이블(도체의 공칭단면적이 22mm ² 을 넘는것)	휴즈	· 전기足온기
· 전기 溫床선	· 통형휴즈	· 전기슬리퍼
전선관	·栓형휴즈	· 전기무릎덮개
[금속제전선관류]	배선기구	· 전기방석
· 금속제전선관	· 리모트콘트롤릴레이	· 전기카페트
· 일종금속제可撓전선관	· 컷아웃스위치	· 전기요
· 이종금속제可撓전선관	· 커버부착나이프스위치	· 전기모포
· 기타금속제可撓전선관	· 분전반유니트스위치	· 전기양카
· 금속제리flow어덕트	· 전자계폐기	· 전기의자커버
· 一種金屬製線桶	· 라이팅덕트	· 전기採暖의자
· 二種金屬製線桶	· 라이팅덕트용의 커플링	· 전기고다츠
· 금속제의 커플링	· 라이팅덕트용의 엘보	· 전기화로
· 금속제의 노멀밴드	· 라이팅덕트용의 티	· 기타 採暖전열기구
· 금속제의 엘보	· 라이팅덕트용의 크로스	· 전기토스터
· 금속제의 티	· 라이팅덕트용의 피드인박스	· 전기오븐
· 금속제의 크로스	· 라이팅덕트용의 엔드캡	· 전기생선구이기
· 금속제의 캡	· 라이팅덕트용의 플러그	· 전기로스터
· 금속제의 코넥터	· 라이팅덕트용의 아답터	· 전기렌지
· 금속제의 박스	· 기타라이팅덕트의 부속품 및 라이팅덕트의 접속기	· 전기곤로
· 금속제의 부상	변압기 · 안정기	· 전기소세지구이기
· 기타전선관류또는 可撓전선관의 금속제부속품	· 벨용변압기	· 와플철판
· 케이블배선용스위치박스	· 표시기용변압기	· 전기오징어구이기
[합성수지제등전선관류]	· 리모트콘트롤릴레이용변압기	· 전기열판
· 합성수지제전선관	· 네온변압기	· 전기슬
· 합성수지제가	· 연소기구용변압기	· 전기물병
· CD관	· 전압조정기	· 전기남비
· 합성수지제등의 커플링	· 나트륨등용 안정기	· 전기후파이펜
· 합성수지제등의 노말밴드	· 살균등용 안정기	· 전기계란삶는기계
	소형교류전동기	· 전기보온그릇
	· 반발시동유도전동기	· 전기가습대
	· 분상시동유도전동기	· 전기牛乳끓이는기계
		· 전기탕비기
		· 전기커피끓이는기계

전기용품명	전기용품명	전기용품명
· 전기차끓이는기계 · 전기 酒덥히는기계 · 전기중탕기 · 전기훈증기 · 전자유도가열식조리기 · 기타조리용전열기구 · 면도용탕비기 · 전기머리고데기 · 헤어컬 · 머리가습기 · 기타 이용전열기구 · 전열나이프 · 전기용해기 · 전기燒成爐 · 전기스토브 · 전기납땀기 · 인두가열기 · 기타공작용 및 공예용전열기구 · 타올훈 증기 · 전기소독기 · 습윤기 · 전기湯のし기 · 투입탕비기 · 전기순간탕비기 · 현상향온기 · 전열보드 · 전열시트 · 전열매트 · 전기건조기 · 전기플레스기 · 전기육묘기 · 전기부화기 · 전기육종기 · 전기다리미 · 전기봉제고데기 · 전기접착기 · 전기향로 · 전기훈제살충기 · 전기온습기	전동력응용기계기구 · 벨트콘베어 · 전기냉장고 · 전기냉동고 · 전기제빙기 · 전기냉수기 · 공기압축기 · 전동미싱 · 전기회전대패 · 전기연필깎이 · 전동교반기 · 전기가위 · 전기浦蟲기 · 전기에초기 · 전기 커터기 · 전기 잔디깎는기계 · 전동탈곡기 · 전동 정미기 · 전동軟打기 · 전동 새끼꼬기 기 · 선란기 · 세란기 · 원예용 전기경토기 · 곤포가공기 · 스루메 가공기 · 과즙기 · 쥬스믹서 · 푸드믹서 · 전기제면기 · 전기製餅기 · 커피분쇄기 · 전기 깡통따는 기계 · 전기 고기가는기계 · 전기빵썰는 기계 · 전기절삭기 · 전기빙쇄기 · 야채세정기 · 전기食品洗機 · 정미기	· 佛事용 茶기 · 포장기계 · 물수건포장기 · 짐을 꾸리는 기계 · 전기탁상시계 · 전기벽걸이시계 · 자동인화정착기 · 자동인화수세기 · 등사기 · 사무용인쇄기 · 수신인인쇄기 · 타임레코더 · 타임스탬프 · 전동타이프라이터 · 帳票분류기 · 문서세단기 · 전동 斷製기 · 丁合機 · 종이철 기 · 구멍뚫는기 · 번호기 · 체크라이터 · 동전 계수기 · 지폐 계수기 · 라벨택 기계 · 라미네이터 · 세탁물 마무리기계 · 세탁물 접이기계 · 물수건 감는 기계 · 자동판매기 · 화폐교환기 · 이발의자 · 전기치술 · 모발건조기 · 전기면도기 · 전기이발기 · 전기손톱광택기 · 기타이용용전동력응용기구 · 선풍기

전기용품명	전기용품명	전기용품명
· 순환기 · 환기팬 · 송풍기 · 전기냉방기 · 전기냉풍기 · 전기제습기 · 팬코일유니트 · 팬부착 대류난방기 · 온풍난방기 · 전기온풍기 · 전기가습기 · 공기청정기 · 전기제취기 · 전기방향확산기 · 전기청소기 · 전기레코더크리너 · 전기칠판크리너 · 기타전기흡진기 · 전기 바닥광택기 · 전기구두 광택기 · 운동용구 및 오락용구세정기 · 전기세탁기 · 전기탈수기 · 전기건조기 · 전기악기 · 전기오르고르 · 벨 · 부저 · 차임 · 사이렌 · 전기글라인더 · 전기드릴 · 전기대패 · 전기톱 · 전기스크류드라이버 · 전기사포 · 전기광택기 · 전기sawing machine · 전기 금속판절삭기	· 전기 溝제작기 · 전기 구멍파기기계 · 전기튜브크리너 · 전기스캐링머신 · 전기태퍼 · 전기너트크리너 · 전기칼가는 기계 · 기타 전동공구 · 전기분수기 · 전기분무기 · 전동식흡입기 · 지압대용기 · 기타가정용전동력용용치료기 · 전기 遊戲器 · 육조용전기온수순환정화기	· 복사기
		전자응용기계기구
		· 전자시계 · 전자식탁상계상기 · 전자식금전등록기 · 전자냉장고 · 인터폰 · 라디오수신기 · 테이프레코더 · 레코더플레이어 · 줌크박스 · 기타음향기기 · 비디오테이프레코더 · 消磁器 · 텔레비전수신기 · 텔레비전수신용부스터 · 고주파웰더 · 전자렌지 · 초음파 쥐 驅除機 · 초음파가습기 · 초음파세정기 · 전자응용 유희기구 · 가정용저주파치료기기 · 가정용초음파치료기 · 가정용초단파치료기
		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
	· 사진 燒付기 · 마이크로필름리더 · 슬라이더영사기 · 오버헤드영사기 · 반사투영기 · 뷰어 · 일렉트로닉스플래쉬 · 사진 引伸기 · 사진引伸기용램프하우스 · 백열전구 · 형광램프 · 전기스타터 · 가정용형광등기구 · 하드램프 · 정원등기구 · 장식용전등기구 · 기타백열전등기구 · 기타방전등기구 · 광고등 · 檢卵기 · 전기소독기 · 가정용광선치료기 · 충전식휴대전등	· 전등부착가구 · 콘셉트부착가구 · 기타전기기계기구부착가구 · 조광기 · 전기연필 · 누전검지기 · 방법경보기 · 아크용접기 · 잡음방지기 · 의료용물질생성기 · 가정용전위치료기 · 전기냉장고(흡수식) · 전기절삭용전원장치

일본의 소비생활용품안전법(PSC마크) 제도

1. 소비생활용품안전법, PSC마크제도 개요

1) 제도의 성격 : 자기확인 및 제 3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, 신고제도

2) 근거법규 및 도입(시행) 시기

- 근거법규명 :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(1963년 6월 6일 제정)
- 동 법에 의거, 1964년 3월 5일부터 S마크 표시제도 실시
- 1985년 12월 법률개정을 통해 ‘自己認証制度’ 도입
- 2000년 10월 법률개정으로 S마크가 PSC마크제도로 변경

3) 운영배경 및 목적

- 소비생활용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함.
- 특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, 소비생활용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

4) 제도 적용지역 : 일본 전역

5) 적용 대상품목 : 총 6개 품목

○ 특별특정품목 : 3개 품목

- 유아용 침대 : 주로 가정에서 생후 24개월 이하 유아용의 수면 또는 보육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, 搖動形은 제외
- 휴대용레이저응용장치 : 레이저 光(가시광선에 한함)을 외부에 照射하여 문자와 도형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에 한함
- 욕조용 온수순환기 : 순환하는 물의 최대 유량이 10L/분 이상의제트분사 욕조등 강제순환식의 욕조

○ 특정품목 : 3개품목

- 가정용 압력냄비 및 솥 : 용적량 10리터이하의 것으로, 9.8키로 파스칼 이상의 게이지 압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에 한함.
- 승용차 헬멧 : 자동이륜차 또는 원동기가 부착된 자전거용에 한함.
- 등산용 로프 : 신체확보용의 것에 한함.

※ 소비생활용품안전법상에는 특정품목이 6개품목으로, 이 특정품목안에 특별특정품목이 3개가 포함되어 있음.

6) 제도 주요내용

○ 개요

법률 개정 전	법률 개정 후
제1종특정제품(정부인증품목) · 등록 제2종특정품목(자기확인품목) · 신고	특정제품(자기확인품목) · 특정제품중 특별특정제품은 제3의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의무 ·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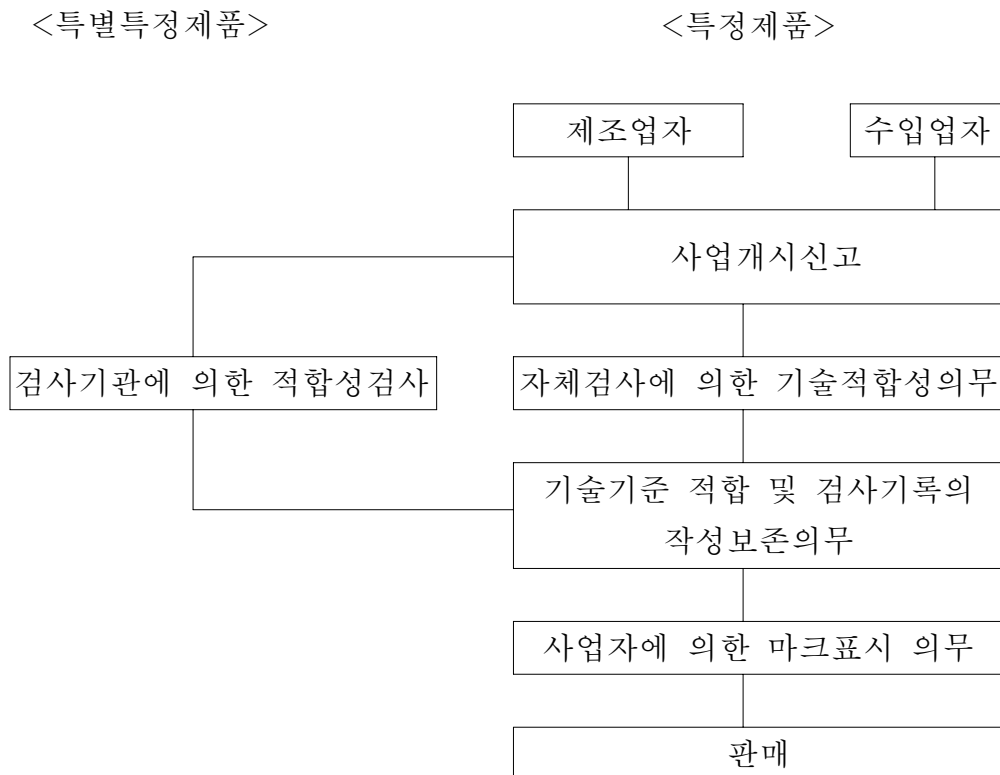
○ 특정제품

- 소비생활용품 중 구조, 재질, 사용상황등을 보고 일반소비자의 생명 및 안전에 대해 특히 위험을 끼칠 요인이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특정 제품으로서 지정
- 특정제품은 “자기확인품목”으로 사업자는 사업신고를 하고, 自主 검사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확인, 기록작성 및 이의 보존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PSC마크의 부착이 가능함

○ 특별특정품목

- 특정제품중 일반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의 확보가 충분치 않다고 인정되어지는 제품을 특별특정제품으로서 지정
- 특별특정제품은 사업자의 自主검사에 의한 안전성확보에 더불어 제3의 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함
- 인정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받을 때,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고, 검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수령·보존할 경우 PSC마크 부착이 가능함

[소비생활용품안전법 체계]



○ 사업신고

- 특정제품의 제조사업자 및 수입자는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에 따라 다음사항을 주무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.(벌칙 : 30만엔 이하의 벌금)
 - 성명(회사명), 주소, 대표자명(법인의 경우)
 - 특정제품의 형식구분
 - 당해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명칭 및 주소
 - 당해 특정제품의 결함에 의해 일반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장애가 발생시,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조치

○ 적합성 검사

- 사업신고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이 특별특정제품일 경우 주무장관이 인정 또는 승인하는 검사기관에 의해 적합성검사를 받고, 해당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해야함 (벌칙 : 30만엔 이하의 벌금)
- 국가에 대한 종래의 형식인가신청은 不要함

○ 검사 및 검사기록의 보존 의무

- 신고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특정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, 그 검사기록을 작성, 보존할 의무가 있음(벌칙 : 30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표시의 의무 및 판매의 제한

- 특정제품(특별특정제품)의 제조, 수입 또는 판매사업자는 제품마다 省습에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PSC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, 판매 및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(벌칙 : 1년이하의 징역,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)



[특별특정제품]



[특정제품]

※PSC : PRODUCT SAFETY CONSUMER

7) 제품유통후의 조치

○ 보고 징수 및 현장출입검사

- 주무장관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비생활용품의 제조, 수입 또는 판매사업을 행하는 者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업등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, 사업소, 공장, 사업장, 창고 또는 사업소에 출입하여 소비생활용품, 업무의 상황, 장부, 서류,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

○ 표시의 금지

- 사업신고자가 제조, 수입한 특정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, 일반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
- 검사기록의 작성, 보존의무 및 특별특정제품의 제조, 수입에 관한 인정·승인검사기관의 기술기준적합성 검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- 주무장관은 사업신고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고한 형식의 특정제품에 PSC마크표시의 부착을 금지할 수 있음

○ 긴급명령

- 주무장관은 특정제품을 포함한 소비생활용품의 결함에 의해 일반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해서 중대한 위험이 발생, 또는 발

생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, 위험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소비생활용품의 제조 및 수입사업자에 대해 제품의 회수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

○ 위험등 방지명령

- 주무장관은 신고사업자에 의한 무표시품의 판매, 기준부적합품의 제조, 수입, 판매에 의해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, 당해 위험 및 장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한 당해제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

○ 벌칙

- 특정제품의 판매제한, 표시제한, 표시금지, 인정금지기관의 인정취소등 위해방지명령, 긴급명령의 위반자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(소비생활용품 안전법 제97~100조)

2. 적합성 인정 · 승인검사기관

1) 인정검사기관

○ 근거규정 :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 16조~ 제 28조

○ 검사기관 인정의 조건 :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 18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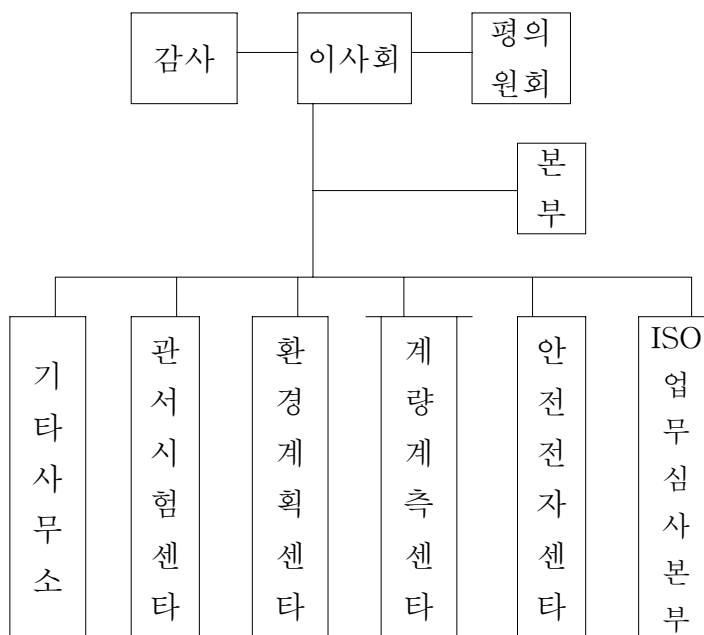
- 국내에 있는 사업소에 의해 검사를 하는 者
- 적합성검사의 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충분한 經理的 기초 및 기술적능력을 보유할 것
- 법인의 경우, 그 임원 및 구성원의 구성이 적합성검사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
- 적합성검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는 者로서 주무省廳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일 것

2) 승인검사기관

- 근거규정 :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 29조
- 검사기관 승인의 조건
 - 외국에 있는 사업소에서 검사를 행하는 者
 - 기타조건의 경우 인정검사기관의 인정조건을 준용함

3) 인정검사기관명

- (財)日本品質保證機構(JQA)
 - 주 소 : 東京都千代田區丸の内 2-5-2
 - 전 화 : 03-6212-9001
 - 팩 스 : 03-6212-9002
 - 홈페이지 : <http://www.jqa.jp>
 - 인정일자 : 2001년 2월
 - 인정구분 : 휴대용레저응용장치
 - 조직도



○ (財)日本文化用品安全試験所

- 주소 : (郵)130 東京都 墨田區 東駒形4-22-4
- 전화 : 03-3829-2515
- 팩스 : 03-3829-2549
- 인터넷 홈페이지 : <http://www.mgsl.or.jp>
- 설립일 : 1975년 2월
- 주요기능 : 소비생활용품안전법 관계업무, 공업표준화법 관계
업무, 완구안전마크 관련업무, 公害관계 등 계량업무,
상품테스트 및 품질 유지.향상에 관한 조사 등
- 인정일자 : 2000년 12월
- 인정구분 : 유아용침대/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

○ 주식회사 UL APEX

- 주 소 : 三重縣 伊勢市 朝熊町 4383-326
- 전 화 : 0596-24-6717
- 팩 스 : 0596-24-8020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ulapex.co.jp>
- 인정일자 : 2001년 5월
- 인정구분 : 휴대용레저응용장치/욕조용 온수순환기

○ 日本車輛検査協會

- 주소 : 東京都北區豊島7-26-28(3階)
- 전화 : 03-5902-3455
- 팩스 : 03-5902-3411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jvia.or.jp>
- 인정구분 : 승용차용 헬멧

○ 製品評價技術基盤機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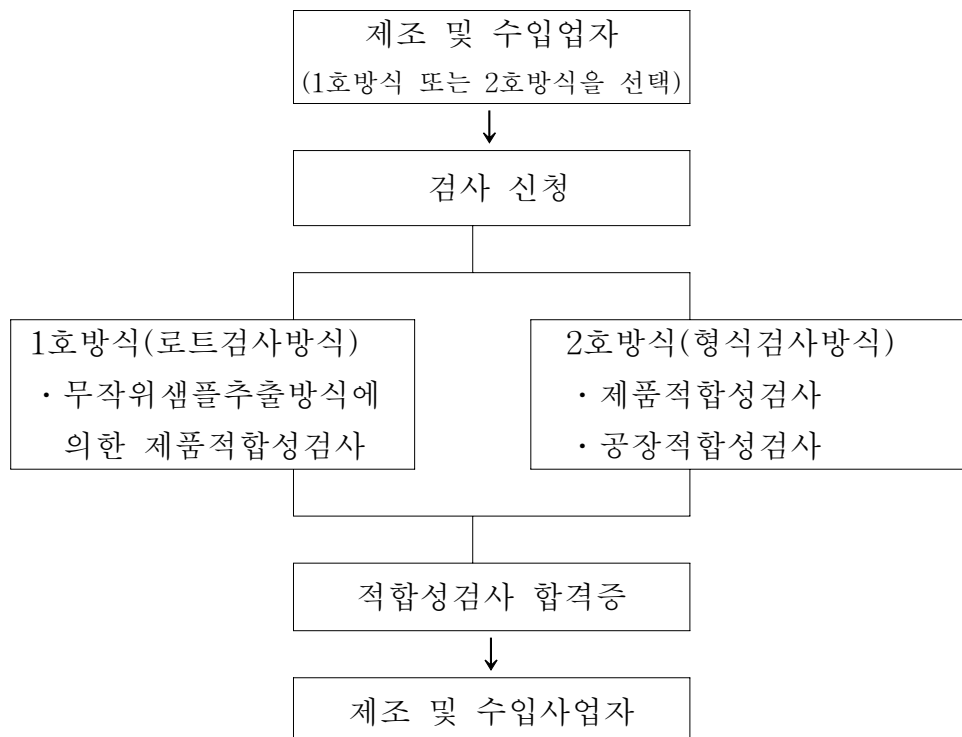
- 주소 : 東京都澁谷區西原 2-49-10
- 전화 : 03-3481-1921
- 팩스 : 03-3481-1920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nite.go.jp>
- 인정구분 : 등산용로프

3. 적합성검사

1) 적합성검사 신청서류(방식에 따른 약간의 차이 존재)

- 신청서 양식(1호방식 또는 2호방식)
- 사업신고서 사본
- 형식구분표
- 표시 및 취급설명서
- 구조도, 재질 및 성능의 개요,
- 사진(또는 카타로그)
- 시험용샘플, 품질관리 방법의 개요
- 검사설비리스트, 공장 및 사업장의 도면

2) 적합성 검사 절차



※ 2호방식에 의한 검사의 경우 샘플수 및 1호방식에 의한 경우 검사원이 로트별 수량에 의해 샘플을 무작위 추출하므로 샘플의 수량이 검사마다 차이가 있음

3) 제품 및 공장검사

- 제품검사는 제조과정, 재료, 완성품에 대해 검사하여 취급설명서, 표시, 강도등을 검사함
- 공장검사의 경우 해당제품의 제조설비, 검사설비등을 검사함
- 로트검사방식의 경우 공장검사는 하지 않음

4) 검사기간

-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
 - 로트방식의 경우 14일이 소요되며 형식검사방식의 경우 공장검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대략 1개월-2개월이 소요됨
- 유아용침대
 - 적합성검사 이전에 안전적합기준검사를 실시하며 안전적합기준검사가 3주~4주정도, 적합성검사의 경우도 3주~4주정도 소요됨

5) 검사비용

-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
 -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로트검사의 경우 보통 30만엔정도 비용이 들며 검사가 복잡한 제품일 경우 50만엔정도이고, 출장비는 별도임.
 - 형식검사방식의 경우 제품검사시 17만엔, 공장검사시 15만엔, 적합성 합격증발급비는 5만엔이며 여기에 출장비 및 검사원의 일당이 추가됨.

○ 유아용침대

- 안전적합기준 검사시 제품검사비용으로 1호검사의 신청수수료는 샘플 1개당 91엔(소비세별도)이며, 2호검사의 경우 형식당 61,200(소비세 별도)임. 제품의 형식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므로 검사기관과의 상담이 필요. 여기에 출장비 및 검사원의 일당이 추가됨

6) 검사유효기간

-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는 적합판정을 받은 3년간 유효하며, 유아용 침대의 경우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10년간 동일형식의 제품에 한해 PSC마크를 부착할수 있음.

일본의 가스기구 PSTG 및 PSLPG마크제도

1. PSLPG 마크제도 개요

1) 제도의 성격 : 검정, 등록·형식승인제도를 통한 정부인증을 폐지하고 제조, 수입사업자에 의한 자기확인제도

2) 근거법규 및 도입(시행) 시기

○ 근거법규명

- 가스事業法(1964년 제정, 1999년 PSTG마크제도로 개정)
- 液化石油가스의 보안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(1971년 제정, 1999년 PSLPG마크제도로 개정)

○ 검정제도 및 정부인증제도에서 1999년 PS마크제도로 변경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

3) 운영목적

-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가스용품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.
- “액화석유가스법” 및 “가스사업법”의 일부 개정으로 종래의 검정제도 및 등록승인형식제도가 적합성검사제도로 변경되어 2000년 10월부터 실시됨. 이는 규제 합리화(정부규제에 의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)를 통해 소비자 안전확보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

4) 적합성검사제도 적용 대상품목

- “가스사업법”상의 특정가스용품 : 도시가스用 4개품목

- 半밀폐식 가스 瞬間湯沸器
- 半밀폐식 스토브
- 半 밀폐식가스버너부착 옥조용 열탕기
- 옥조용 가스버너

○ “액화석유가스법”의 특정액화석유가스기구등 : LPG用 7개품목

- 액화석유가스곤로
- 半밀폐식 순간탕비기
- 半밀폐식가스버너부착 옥조용 열탕기
- 옥조용 열탕기
- 열탕기부착 옥조용버너
- 반밀폐식스토브 - 가스栓(개폐장치)

○ 특정이외의 가스용품 및 특정이외의 액화석유가스기구

- 가스사업법
 - 순간탕비기(개방식, 밀폐식, 옥외식 한정)
 - 스토브(개방식, 밀폐식, 옥외식 한정)
 - 버너부착 옥조용열탕기(밀폐식, 옥외식 한정)
- 액화석유가스법
 - 순간탕비기(개방식, 밀폐식, 옥외식 한정)
 - 스토브(개방식, 밀폐식, 옥외식 한정)
 - 버너부착 옥조용열탕기(밀폐식, 옥외식 한정)
 - 가스누출경보기 · 調整器
 - 耐震 자동가스 차단기
 - 금속이음쇠부착 고압호스
 - 금속이음쇠부착 저압호스

5) 제도 주요내용

○ 제 3의 인정 ·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

- “가스사업법”상의 특정가스용품, “액화석유가스법”의 특정액화석유가스기구등은 제 3의 인정·승인 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받고, 합격된 제품에 PSTG마크 및 PSLPG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○ 기술기준 적합기준에 따른 自主검사

- 특정이외의 가스용품 및 특정이외의 액화석유가스기구등은 제 3의 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는 필요하지 않으나, 기술기준적합기준에 따라, 제조업체·수입업체가 自主검사를 통해 PSTG마크 및 PSLPG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○ PSTG 및 PSLPG마크



[특정가스용품]



[특정의 가스용품]



[특정액화석유가스기구]



[특정의 액화석유가스기구등]

○ 검사 및 검사기록의 보존

- 제조 또는 수입·판매하는 사업자는 특정 및 특정의 가스용품, 특정 및 특정의 석유액화가스기구등의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, 그 검사기록을 작성, 보존할 의무가 있음(벌칙 : 30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표시의 의무 및 판매의 제한

- 특정 및 특정의 가스용품, 특정 및 특정의 석유액화가스기구를 제

조,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마다 省습에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PSTG마크, PSLPG를 부착하지 않으면, 판매 및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(벌칙 : 1년이하의 징역,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)

6) 제품유통후의 조치

○ 보고 징수 및 현장출입검사

- 경제산업성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가스용품, 석유액화가스기구등의 제조, 수입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서 그 업무 또는 經理의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. 또한 사업소, 공장, 사업장, 창고 또는 사업소에 출입하여 제품, 업무의 상황, 장부, 서류,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

○ 표시의 금지

- 사업신고자가 제조, 수입한 특정 및 특정외 가스용품, 특정 및 특정외 석유액화가스기구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, 일반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장해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
- 검사기록의 작성, 보존의무 및 특정가스용품, 특정석유액화가스기구의 제조, 수입에 관한 인정·승인검사기관의 기술기준적합성 검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- 주무장관은 사업신고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고한 형식의 특정 및 특정외 가스용품, 특정 및 특정외 석유액화가스기구에 PSTG, PSLPG마크표시의 부착을 금지할 수 있음

○ 개선명령

- 경제산업성 장관은 가스용품, 석유액화가스기구등이 기술적합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조, 수입 및 검사의 방법, 기타 업무의 개선방법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

○ 위험등 방지명령

- 경제산업성 장관은 신고사업자에 의한 무표시품의 판매, 기준부적합품의 제조, 수입, 판매에 의해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, 당해 위험 및 장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한 당해 제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

○ 벌칙

- 특정제품의 판매제한, 표시제한, 표시금지, 인정검사기관의 인정취소등 위해방지명령등의 위반자들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만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액화석유가스법 제96~104조, 가스사업부 제56~62조)

2. 적합성 인정 · 승인검사기관

1) 인정검사기관

- 근거규정 : 가스사업법 제 39조 15~ 제 39조15의 2
액화석유가스법 제 51조 ~62조

○ 검사기관 인정의 조건 :

- 국내에 있는 사업소에 의해 검사를 하는 者
- 적합성검사의 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충분한 經理的 기초 및 기술적능력을 보유할 것
- 법인의 경우, 그 임원 및 구성원의 구성이 적합성검사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
- 적합성검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는 者로서 경제산업省令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일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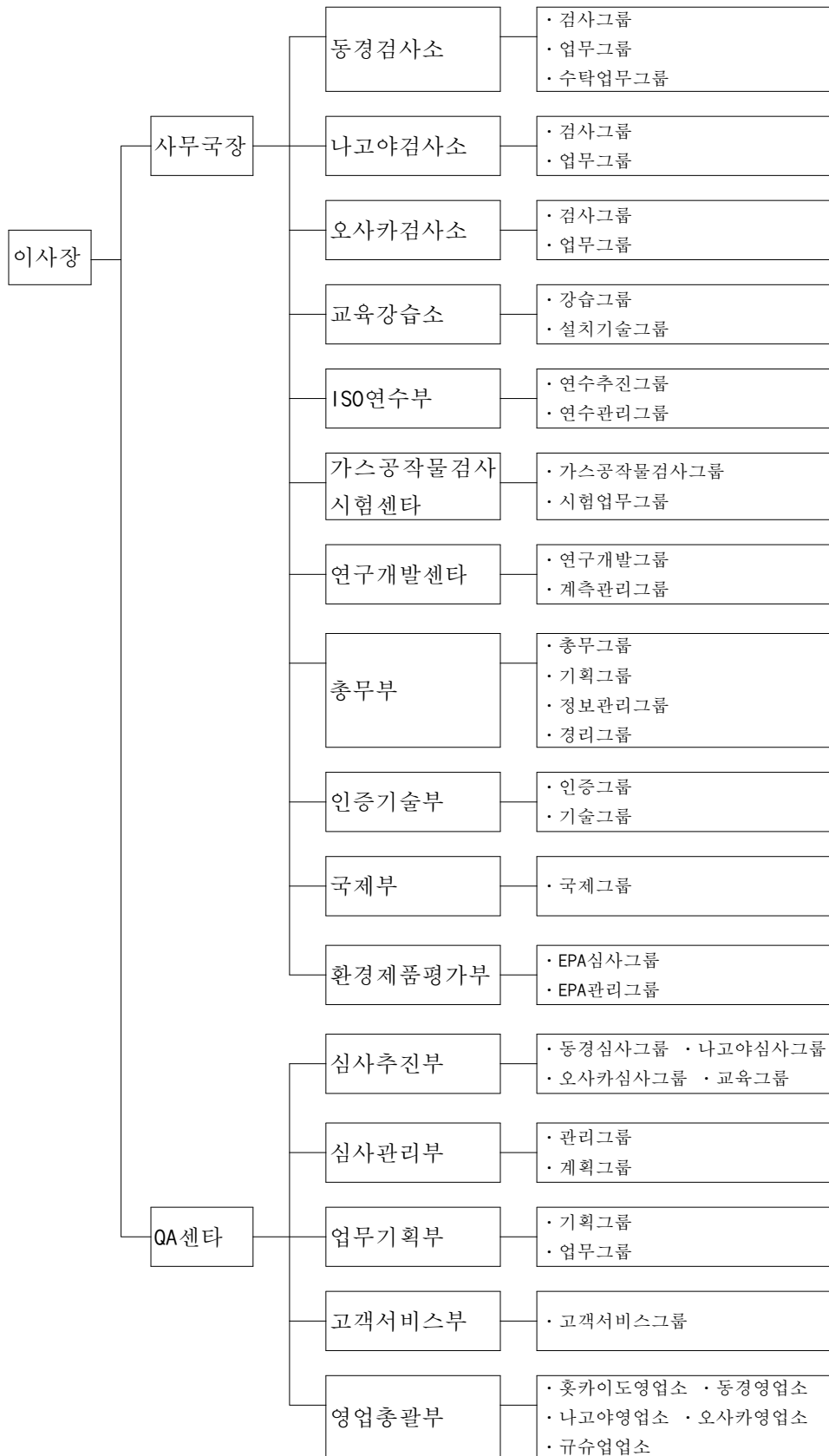
2) 승인검사기관

- 근거규정 : 가스사업법 제39조 16 ~ 39조 18
액화석유가스법 제 63조 ~ 64조
- 검사기관 승인의 조건
 - 외국에 있는 사업소에서 검사를 행하는 者
 - 기타조건의 경우 인정검사기관의 인정조건을 준용함

3) 인정검사기관명

- 기관명 : (財)日本가스機器検査協會
(Japan Gas Appliances Inspection Association)
 - 주소 : 東京都 港区 赤坂 1-4-10 JIA ビル
 - 전화 : 03-5570-5981(대표), 5990
 - 팩스 :
 - 인터넷 홈페이지 : www.jia-page.or.jp
 - 인정일자 : 2001년 3월
 - 인정분야 :
 - ・ 半 밀폐식 가스 瞬間湯沸器(가스용)
 - ・ 半 밀폐식 스토브(가스용)
 - ・ 半 밀폐식 가스버너부착 옥조용 열탕기(가스용)
 - ・ 옥조용 가스버너(가스용)
 - ・ 액화석유가스콘로(LPG용)
 - ・ 半 밀폐식 순간탕비기(LPG용)
 - ・ 半 밀폐식 가스버너부착 옥조용 열탕기(LPG용)
 - ・ 옥조용 열탕기(LPG용)
 - ・ 열탕기부착 옥조용버너(LPG용)
 - ・ 반밀폐식스토브 (LPG용)
 - ・ 가스栓(개폐장치)(LPG용)

- 조직도



- (財)일본LP가스기기검사협회
(Japan L.P.Gas Instrument Inspection Association)

- 주소 : 東京都 港区 新橋 1 - 1 8 - 6 (共榮火災ビル)
- 전화 : 0 3 - 5 5 1 2 - 7 9 2 1
- 팩스 : 0 3 - 5 5 1 2 - 7 9 2 3
- 인터넷 홈페이지 : <http://www.lia.or.jp>
- 인정일자 : 2001년 2월
- 인정분야 : 액화석유가스용 가스栓

3.. 적합성 검사

1) 검사의 종류

- 적합성검사는 “액화석유가스법 제 47조 1항” 및 “가스사업법 제 39조 11항”에 의해 제 1호 검사 및 제 2호 검사가 있음
- 제 1호 검사는 1차 검사, 2차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제 2호검사는 제품검사, 검사설비의 확인 및 품질관리체계의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

2) 제1호 검사

- 제1차 검사 : 특정가스용품 및 특정액화석유가스기구등의 형상, 재질, 구조 및 성능에 있어서 검사규정(기술적합에 관한 경제산업省令)에 정해져 있는 기술상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임
- 제 1차검사 신청서류
 - 제 1차검사신청서
 - 구조도 및 작동원리도(제품의 주요재질, 부품의 명세도등)
 - 구조, 재질 및 성능을 설명한 서류

- 제조사업자명, 표시방법 및 위치를 나타내는 표
 - 형식구분표(해당법률에 규정되어 있음)
 - 제품의 샘플등
- 제 2차검사 : 제 1차검사에 합격한 제품의 형식과 동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서 개개의 제품구조 및 성능에 대해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무작위추출의 방식으로 검사를 행함
- 제 2차검사 신청서류는 제 2차 검사신청서임

3) 제2호 검사

- 제품검사 : 특정액화석유가스용기구 및 특정가스용품의 試驗용 제품이 경제산업省令 별표 제 3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임
- 검사설비의 확인 및 품질관리체제의 확인(공장검사)
- 경제산업省令 별표 제4의 기술상의 기준(검사설비의 확인), 경제산업省令 별표 제 5의 기술상의 기준(품질관리체제의 확인)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임
 - 검사설비의 확인 및 품질관리체제의 확인은 반드시 사업자의 공장·사업소등 현장에서 실시해야 함
- 제2호 검사 신청서류
- 제 2호 검사 신청서
 - 구조도 및 작동원리도(제품의 주요재질, 부품의 명세도등)
 - 구조, 재질 및 성능을 설명한 서류
 - 제조 사업자명, 표시방법 및 위치를 나타내는 표
 - 형식구분표(해당법률에 규정되어 있음)
 - 제품의 샘플등
 - 검사설비 및 제조공정, 검사실시상황의 개요
 - 품질관리상황의 설명자료등

4) 검사기간

- 제품에 따라 검사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,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고 신청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경우 제 1호검사의 1차검사가 1개월내외, 2차검사가 3-4일정도 소요됨
- 제 2호검사의 경우 1개월 내외소요

5) 검사비용

- 해당제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
- 액화석유가스 곤로의 경우(JIA)

제 1호 검사		제 2호 검사
제 1차검사	제 2차검사	
54,000엔/건	30엔/1개	33만엔/건 (제품, 공장검사비용 포함) 출장비는 별도

- 호스 가스栓의 경우(LIA)

제 1호 검사		제 2호 검사	
제 1차검사	제 2차검사	제품검사	공장검사
171,000엔/건	18엔/개	289,200엔/건	100,000엔/건 출장비 별도